

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5. 화순군수
 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6. 5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6. 5
- (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화순군의회 부의장 조 영 길

나. 제정사유

- 지방차원의 남북교류·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(안 제2조)
 - 1. 남북교류·협력사업비
 - 2. 협의회 운영비
 - 3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-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. (안 제3조제1항)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. (안 제3조제2항)
-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회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. 점증되는 남북교류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희 군의 재정적, 인력적 한계 그리고 전남남북교류협회의 그간 사업내용 및 정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,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협회의 사업 등에 대한 지

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

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·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)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남북교류·협력사업비
2. 협의회의 운영비
3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제3조(업무의 위탁) ①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.

제4조(감독) 군수는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